

---

## Ⅲ.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각 방식을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에 적용한 경우 RBC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분석방법

#### 가. 보험부채 산출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부채이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 가용자본이 변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우선 각 방식을 적용한 경우의 보험부채를 산출한다.

IFRS 4 Phase II,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 모두 보험부채의 기본 구성은 최선추정치와 위협에 대한 조정(IFRS 4 Phase II는 위협조정, EU Solvency II는 위협마진, 캐나다 MCCR은 MfADs)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먼저 최선추정치를 구하고 각 방식별 특성을 차례로 반영하여 각각의 보험부채를 산출하기로 한다.

최선추정치는 LAT 평가액을 이용한다. LAT 평가액을 최선추정치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현행 LAT 평가가 보험부채 원가평가에 기초한 IFRS 4 Phase I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IFRS 4 Phase II로 이행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매기마다 평가 당시의 손해를, 해약률, 할인을 가정에 따라 보유계약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부채시가 평가 시 최선추정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LAT 평가액은 현재 공식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LAT 평가액은 각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현행 LAT 평가는 상품군을 금리확정형 유배당, 금리확정형 무배당, 금리연동형 유배당, 금리연동형 무배당으로 나누어 각 상품군별로 평가 당시 LAT 평가액과 원가방식 보험 부채인 순보식 책임준비금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다. 여기에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 상품군별 순보식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각 상품군별 LAT 평가액을 구한다.

다음으로 위험조정, 위험마진, MfADs는 Solvency II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 Quantitative Impact Study 5)의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선추정치로 가정한 LAT 평가액의 일정비율로 각각 산출한다. 물론 위험조정, 위험마진, MfADs는 최선추정치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의 상품 및 자산에서 비롯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정도를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위험에 대한 조정을 국내 보험회사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 보험회사의 평균적인 위험마진을 각각 최선추정치의 일정비율로 보고한 Solvency II 제5차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위험조정을 산출한다.

이제 Solvency II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위험마진의 합으로 구하고, MCCR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MfADs의 합으로 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R

- 보험부채 = LAT평가액(최선추정치)  
+LAT평가액의 일정비율(위험마진 또는 MfADs)
- 

한편 IFRS 4 Phase II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을 더한 후 계약서비스 마진을 추가하여 보험부채를 구한다. 이때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의 계약서비스 마진은 0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장래손실계약은 대부분 2000년 초 이전에 판매한 상품으로 계약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크기에 대

해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IFRS 4 Phase II의 계약서비스마진은 장래이익을 의미하므로,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을 더한 값이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상품군(즉,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계약서비스마진을 순보식 책임준비금에서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차감한 값으로 가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FRS 4 Phase II 보험부채는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은 평가 당시의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계약서비스 마진은 계약 시점에 총액을 산출한 후 서비스제공 정도에 따라 상각한다. 예를 들어 계약시점에 예상되는 장래 현금유입 현가는 120이고 장래 현금유출 현가는 90, 위험조정은 10이라면 계약시점에서 계약서비스마진은  $20(=120-90-10)$ 이다. 그리고 만약 매해 1씩 상각하는 경우라면 5년 후 계약서비스 마진은  $15(=20-1 \times 5)$ 가 된다.

계약서비스 마진의 또 다른 역할은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계약시점에서 5년 후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 80, 위험조정 5, 계약서비스마진 15를 합한  $100(=80+5+15)$ 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실제 5년 시점에서의 산출한 최선추정치가 85이고 위험조정은 10이라면 계약서비스마진은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의 변동을 흡수하여  $5(=15+(80-85)+(5-10))$ 가 된다. 따라서 전체 보험부채의 크기는  $100(=85+10+5)$ 으로 계약시점에서 예상한 5년 후 보험부채와 같다. 그러나 만약 실제 5년 시점에 산출한 최선추정치가 95이고 위험마진은 15라면 계약서비스마진은 사라지고 보험부채는  $110(=95+15)$ 이 된다.

다시 말해 계약서비스 마진은 그 범위 내에서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의 변동성을 완충하므로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의 합이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보험부채보다 작은 경우는 보험부채 크기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의 합이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에만 보험부채의 크기가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보험부채보다 커지게 된다.

한편 순보식 책임준비금은 원가방식으로 계산한 보험부채이다. 즉 순보식 책임준비금은 계약 당시 향후 보험부채의 크기를 미리 계산한 값이다. 따라서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더한 값이 계약 시 예상한 보험부채인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상품군에 한하여 그 차이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여기서 추정된 계약서비스 마진은 할인을 변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계약서비스마진은 상각 방식 또는 전환시점 보유계약의 계약서비스 마진 산출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비스마진을 이와 같이 산출하면, IFRS 4 Phase II 보험부채는 (최선추정치 + 위험마진 + 계약서비스마진)이므로 결과적으로 순보식 책임준비금(=LAT 평가액 + 위험마진 + (순보식 책임준비금 - LAT 평가액 - 위험마진))이 된다. 따라서 IFRS 4 Phase II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의 합이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는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의 합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순보식 책임준비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IFRS 4 Phase II

- 이행현금흐름 = LAT평가액(최선추정치)  
+ LAT평가액의 일정비율(위험조정)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이행현금흐름: 보험부채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이행현금흐름: 보험부채 = 이행현금흐름
- 

## 나. 가용자본 산출

이제 각 방식을 적용해 구한 보험부채와 원가방식 보험부채인 순보식 책임준비금의 차이를 원가방식인 현행 가용자본에 반영하여 각 방식별 가용자본을 구한다. 각 보험회사별 현행 가용자본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다.

EU Solvency II 방식의 가용자본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U Solvency II 보험부채가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만큼 가용자본이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가용자본이 줄어든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EU Solvency II

- 순보식 책임준비금 > EU Solvency II 보험부채  
: 가용자본이 [순보식 책임준비금 - EU Solvency II 보험부채] 만큼 증가
  - 순보식 책임준비금 < EU Solvency II 보험부채  
: 가용자본이 [EU Solvency II 보험부채 - 순보식 책임준비금] 만큼 감소
- 

반면 <Ⅲ-1-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FRS 4 Phase II 보험부채는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을 수 없다. 따라서 IFRS 4 Phase II 보험부채가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두 값이 같은 경우에는 가용자본의 변화가 없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IFRS 4 Phase II

- 순보식 책임준비금 = IFRS 4 Phase II 보험부채  
: 가용자본 변화 없음
  - 순보식 책임준비금 < IFRS 4 Phase II 보험부채  
: 가용자본이 [IFRS 4 Phase II 보험부채 - 순보식 책임준비금] 만큼 감소
- 

캐나다 MCCR 방식의 가용자본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캐나다 MCCR 보험부채가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가용자본이 줄어든다. 그러나 캐나다 MCCR 보험부채가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을 경우(즉,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차액이 전부 가용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MCCR 방식은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 이내에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약식 책임준비금(순보식 책임준비금 - 이연신계약비<sup>9)</sup>)에서 캐나다 MCCR 보험부채를 차감한 값을 부의 준비금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합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상품군 내에서 부의 준비금을 갖는 개별 계약은 상품군 전체

---

9)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를 참고함.

의 보험부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둘째 만약 부의 준비금으로 인해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제거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다면 그 차이가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보식 책임준비금과 해약식 책임준비금의 차액인 이연신계약비는 기본자본으로 인식하고, 해약식 책임준비금에서 최선추정치와 MfADs의 합을 차감한 값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때 보완자본의 인정비율은 75%로 한다. 왜냐하면 캐나다 MCCR에서는 부의 준비금은 개별 계약 단위로 계산하여 100% 인정하고, 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상품군 단위로 계산하여 75% 인정하나, 현행 LAT 평가는 상품군 단위로 계산하므로 부의 준비금, 해약환급금 부족액 모두 75%만 인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한편 국내 손실계약의 경우 대부분 과거 2000년 중반 이전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부의 준비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캐나다 MCCR

- 해약식 책임준비금 < 캐나다 MCCR 보험부채  
: 미상각신계약비만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해약식 책임준비금 - 캐나다 MCCR 보험부채]의 75%만큼 보완자본으로 인정
  - 해약식 책임준비금 < 캐나다 MCCR 보험부채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캐나다 MCCR 보험부채] 만큼 기본자본으로 인정
  - 순보식 책임준비금 < 캐나다 MCCR 보험부채  
: 가용자본이 [캐나다 MCCR 보험부채 - 순보식 책임준비금] 만큼 감소
- 

#### 다. RBC 비율 산출

마지막으로 국내 RBC 강화 로드맵을 반영한 요구자본을 산출한 후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각 방식별 RBC 비율을 구한다.

## 2. 생명보험

### 가. 주요가정

먼저 최선추정치는 현행 LAT 평가액(2014년 12월 말 기준)과 같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2020년 또는 2021년 도입될 IFRS 4 Phase II와 포트폴리오의 구분<sup>10)</sup>, 할인율의 산출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LAT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반면 IFRS 4 Phase II의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을 기초<sup>11)</sup>로 하고 있어 2014년 현재 LAT 평가 시 할인율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제 보험부채는 이 보고서의 분석보다 상당히 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R의 보험부채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위험마진(EU)과 MfADs(캐나다) 값은 Solvency II의 최근 계량영향평가(Solvency II QIS 5) 결과를 참고하였다. 2,520개 보험회사가 참여한 계량영향평가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마진은 평균적으로 최선추정치의 2.67%로 보고되었고, 이를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서도 위험마진 그리고 위험마진과 유사한 개념의 MfADs를 최선추정치의 2.67%로 가정한다.

그리고 IFRS 4 Phase II 보험부채 산출 시 위험조정 값은 위험마진의 50%를 적용한다. 이는 위험조정은 보험리스크 부분만을 고려하고 위험마진은 시장, 신용, 금리 등 자산과 관련된 위험도 고려하므로, 위험조정이 위험마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생명보험회사 RBC 요구자본에서 보험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이다. 그러나 현행 RBC 요구자본 산출 시 보험리스크액은 당기(1년)에 해당하는 리스크만 산출하는 반면 위험조정과 위험마진은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10) 현행 LAT 평가에서 포트폴리오 구분 시 일반계정은 배당 유무, 금리연동 유무를 기준으로 4개로 구분하고 여기에 변액보험을 더하여 다섯 개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IFRS 4 Phase II는 포트폴리오 구분이 현행 LAT 평가와 다를 수 있으며, 그 구분에 따라 보험부채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11) [무위험수익률 + 비유동성 프리미엄] 또는 [자산운용수익률 - 신용 스프레드]

보험리스크를 산출하고 있어 위험조정이 위험마진의 20% 정도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험마진은 자본비용법(CoC, Cost of Capital)만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반면, 위험조정은 VaR, TVaR, CoC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비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조재린 외(2014)를 참고하여 국내 RBC 강화 로드맵(신뢰수준 상향 등)을 반영한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현행 LAT 평가액(2014년 12월 말 기준)을 부채의 최선추정치로 가정
  - 위험마진은 최선추정치 2.67%로 가정
  - 위험조정은 위험마진의 50%를 적용
  -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가정
- 

## 나. 분석결과

2014년 말 현재 생명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67조이고 요구자본은 22조로 RBC 비율은 311%다. 각 방식에 따른 가용자본을 생명보험회사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요구자본은 요구자본 강화 로드맵에 따라 현재보다 30% 증가한 28조로 가정한다.

먼저 IFRS 4 Phase II 방식을 적용하면 생명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3조로 급락한다. 왜냐하면 장래손실은 즉시 인식하나 장래이익은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므로, 장래손실(41조)과 손실계약의 위험조정(2조)을 합한 43조의 가용자본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EU Solvency II 방식 적용 시 가용자본은 80조로 오히려 증가한다. 그 이유는 장래손실(41조)과 손실계약의 위험마진(4조)을 합한 45조만큼 가용자본이 감소하나, 장래이익(67조)에서 이익계약의 위험마진(8조)을 뺀 59조만큼 가용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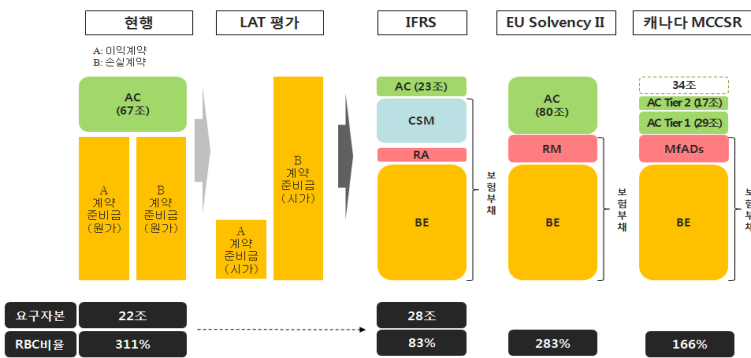


캐나다 MCCR은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으로 이루어진 보완자본 중 인 정범위 제한(기본자본의 100%)으로 인해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34조)이 발생하여 총가용자본은 46조(=80-34)가 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IFRS 4 Phase II 방식의 경우 RBC 비율이 311%(=67/22)에서 83%(=23/28)로 급락한다. 반면 EU Solvency II와 같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283%(=80/28)이며, 캐나다 MCCR 방식의 경우 다소 하락한 166%(=46/28)이 된다 (<그림 III-1> 참조).

그러나 위 결과는 할인을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4년 LAT 평가 시 사용한 할인은 각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기초하여 산출한 결과이므로 4.5%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IFRS 4 Phase II 뿐만 아니라 EU Solvency II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한 할인을 사용하므로 4.5%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2)</sup> 이 경우 보험부채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용자본은 본 분석보다 작아질 가능성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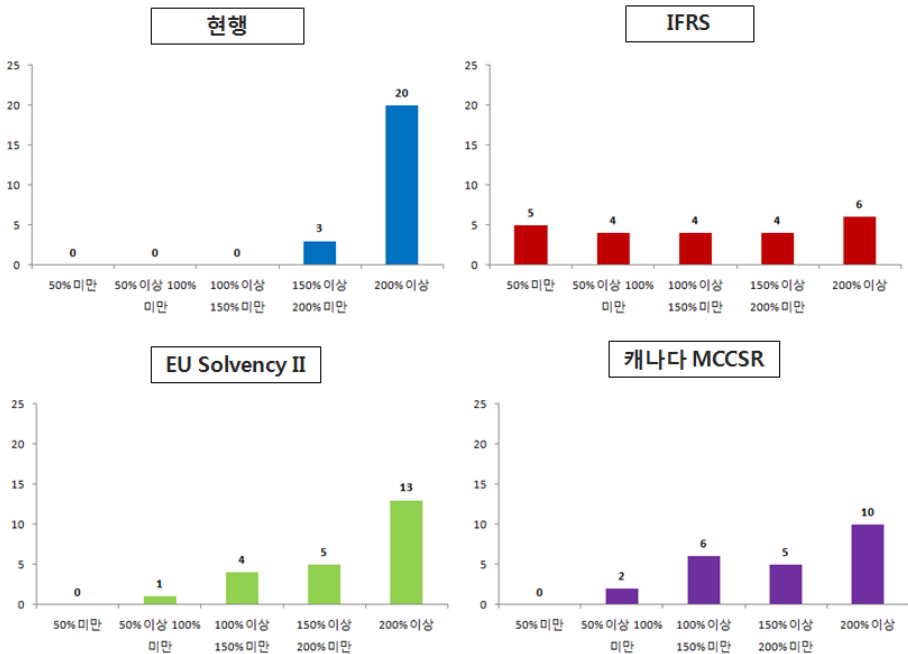
<그림 III-1> 분석결과: 생명보험산업



12) 캐나다 MCCR에서는 CALM(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함. CALM이란 자산, 부채에 대해 최선추정 예측 시나리오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채 현금흐름 종료시점에 잉여금이 0이 되도록 최초자산을 조정하는 방식의 시가평가방식임.

개별회사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말 현재 RBC 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없다. 하지만 IFRS 4 Phase II 방식에서는 13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9개사는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생명보험산업 내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하면 5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1개사가 RBC 비율 100% 미만이 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EU Solvency II 방식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아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하더라도 감내할 수준이라 판단된다. 한편 캐나다 MCCR 방식의 경우 RBC 비율 150% 미만은 8개사, RBC 비율 100% 미만은 2개사가 되어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분석결과: 생명보험 회사별 분포



### 3. 손해보험

#### 가. 주요가정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주요가정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EU Solvency II 와 캐나다 MCCR 적용 시 위험마진(또는 MfADs)은 생명보험상품과 유사한 장기보험의 경우 최선추정치의 2.67%를 적용하였으나 일반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은 미경과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의 7.83%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Solvency II 의 최근 계량영향평가 결과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만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위험마진은 평균적으로 최선추정치의 7.83%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IFRS 4 Phase II 적용 시 위험조정은 장기보험의 경우 위험마진의 50%, 일반보험은 위험마진의 100% 값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장기보험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조정이 위험마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보험은 리스크의 대부분이 보험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RBC 강화 로드맵(신뢰수준 상향 등)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생명보험은 30% 증가하는 데 비해 손해보험은 20% 증가에 그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현행 LAT 평가액(2014년 12월 말 기준)을 부채의 최선추정치로 가정
  - 위험마진: 장기보험은 최선추정치의 2.67%로 가정  
일반보험은 미경과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의 7.83%로 가정
  - 위험조정: 장기보험은 위험마진의 50%로 가정  
일반보험은 위험마진의 100%로 가정
  -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가정
- 

#### 나. 분석결과

2014년 말 현재 손해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2조이고 요구자본은 9조로 RBC 비율은 243%다. 각 방식에 따른 가용자본을 손해보험회사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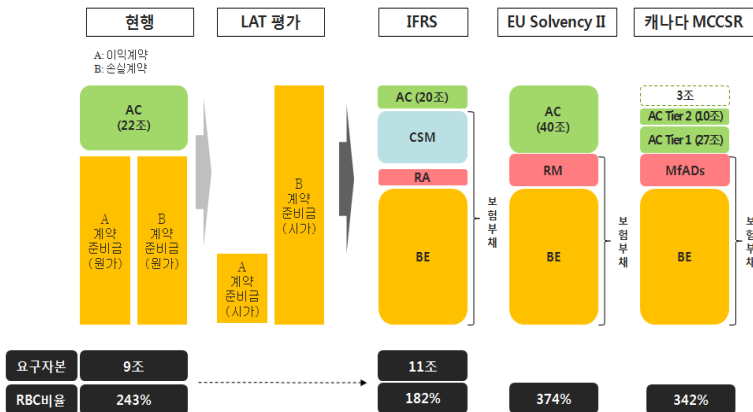
같다. 여기서 요구자본은 요구자본 강화 로드맵에 따라 현재보다 20% 증가한 11조로 가정한다.

먼저 IFRS 4 Phase II 방식을 적용하면 손해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0조로 현재와 비슷하다. 반면 EU Solvency II 방식 적용 시 가용자본은 40조로 오히려 증가한다. 그 이유는 장래손실(1조)과 손실계약의 위험마진(2조)을 합한 3조만큼 가용자본이 감소하나, 장래이익(23조)에서 이익계약의 위험마진(2조)을 뺀 21조만큼 가용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MCCR은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으로 이루어진 보완자본 중 인정범위 제한(기본자본의 100%)으로 인해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3조)이 발생하여 총가용자본은 37조(=40-3)가 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IFRS 4 Phase II 방식의 경우 RBC 비율이 243%(=22/9)에서 182%(=20/11)로 다소 떨어진 다. 반면 EU Solvency II와 같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지금보다 높은 수준인 374%(=40/11)가 되며, 캐나다 MCCR 방식 경우에도 342%(=37/11)로 증가한다. 그러나 위 결과는 할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분석결과: 손해보험산업



개별회사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말 현재 RBC 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2곳이다. 하지만 IFRS 4 Phase II 방식에서는 6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3개사는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손해보험산업 내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하면 2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RBC 비율 100% 미만인 회사는 없다. 또한 캐나다 MCCR 방식의 경우에도 RBC 비율 150% 미만은 3개사, RBC 비율 100% 미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R 방식은 국내 손해 보험회사에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II-4 참조).

〈그림 III-4〉 분석결과: 손해보험 회사별 분포

